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

식품정책과장 : 경자인 ☎ 2133-4701 외식업위생팀장 : 홍기석 ☎ 4715 담 당 : 이희진 ☎ 4711
식품안전팀장 : 차원경 ☎ 4730 담 당 : 박혜성 ☎ 4727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1. 음식점 창업자의 온라인 교육 허용 (식품정책과, '25.10.31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식품 관련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 교육을 받아야 함- (신규영업자) 영업 전 필수 이수, 집합교육, 6시간- (기존영업자) 집합교육 및 원격(온라인) 교육, 3시간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신규영업자의 경우 집합교육만 가능○ 한정적 집합교육 시행 기관 (한국외식업중앙회,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, 대한제과협회)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신규영업자 희망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선택 허용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「식품위생법」 제41조	식품의약품안전처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2. 위생관리책임자의 식품위생교육 중복 면제 (식품정책과, '25.10.31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위생관리책임자는 관리업소에 대한 신규 위생교육을 수료 후, 본인명의로 신규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할 때 다시 신규 위생교육을 받아야함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일 인물의 추가 신규교육으로 개인 비용 및 시간 부담 발생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52조 제3항을 개정하여 동일인이 이수한 경우 신규 교육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식품위생법」 제52조 	<p>식품의약품안전처</p>
<p>3. 음식점 내 수족관 원산지 표시 의무 완화 (식품정책과, '25.10.31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모든 음식점은 수족관 내 생물을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규정하여 메뉴판과 수족관 모두 원산지 표시가 필요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비자 접근이 불가능한 주방 내부 수족관 까지 표시의무가 적용되어 실효성 저하 및 영업자 부담 초래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비자가 직접 접근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장소의 수족관은 표시의무 예외로 규정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 	<p>식품의약품안전처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4. 식품접객업 폐업신고, 영업장 소재지 제한 완화 (식품정책과, '25.10.31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폐업 시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해야함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면 폐업 신고 시 영업장 소재지로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발생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접객업 폐업신고를 전국 모든 시·군·구청 및 세무서에서 접수 가능하게 하고 전산망을 통해 관할 기관으로 자동 이관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4조 	<p>식품의약품안전처</p>
<p>5. 수입 농수산물 유통 이력신고시스템 일원화 (식품정책과, '25.10.31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가 ‘유통이력관리 시스템’ 을 통해 수입 및 유통이력 신고시, 농산물과 수산물의 양수자(배송처) 신고 기준이 상이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일 기업이 동일방식으로 납품하더라도 농수산 품목간 서로 다른 신고기준 적용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양수자 유형 신고기준이 통일되도록 시스템 일원화 필요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」 제10조의2,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(농림축산식품부) ○ 「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」 제31조,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(해양수산부) 	<p>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</p>